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1천400시간”을 각각 “1천200시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후단 “이 경우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의 동일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다른 등급의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기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2)					서비스 분야(32)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8	118	120	162	10	10	3	9

별표 2 중 “16 기계(7/79)”를 “16 기계(7/80)”로 하고, 같은 표의 16 기계(7/80)[종전의 16 기계(7/79)]란의 164 조선(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7)					동력기 계정비				
					선체건 조				
					전산응 용조선 제도				
	조선			조선					
			조선선 체						
			조선의 장						

별표 2 중 “17 재료(5/38)”를 “17 재료(5/39)”로 하고, 같은 표의 17 재료 (5/39)[중전의 17 재료(5/38)]란의 174 용접(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 크용접				
					가스텝 스텐아 크용접				
					이산화 탄소가 스아크 용접				

별표 2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유·의복(2/16)”로 하고, 같은 표 의 19 섬유·의복(2/16)[중전의 19 섬유·의복(2/17)]란의 192 의복(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2 의복(8)				신발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머 천다이 징					
					한복				

별표 2 중 “22 식품가공(2/11)”을 “22 식품가공(2/13)”으로 하고, 같은 표

의 22 식품가공(2/13)[중전의 22 식품가공(2/11)]란의 222 제과·제빵(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제과·제빵(6)					떡제조				
		제과		제과	제과				
				제빵	제빵				

별표 2 중 “26 환경·에너지(2/37)”를 “26 환경·에너지(2/36)”로 하고, 같은 표의 26 환경·에너지(2/36)[중전의 26 환경·에너지(2/37)]란의 261 환경(2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23)	대기 관리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생물 분류 (동물)						
			생물 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수질 관리								
			수질 환경	수질 환경					
			자연생태 복원	자연생태 복원					
	자연환경 관리								
	토양 환경		토양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관리					
			환경 위해 관리						

별표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멀티미디어

어컨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스포츠경영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같은 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서비스·경험디자인”을 “서비스·경험디자인,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로 하고, 같은 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외)”를 “외), 타워크레인운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멀티미디어컨텐츠제작전문가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 소관으로 하고, 3D프린터개발”을 “3D프린터개발”로 한다.

별표 8 중 02 경영·회계·사무(4/25)의 021 경영(6)의 사회조사분석사2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조사분석사2급	필기시험	1. 조사방법과 설계 2.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3. 통계분석과 활용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별표 8 중 02 경영·회계·사무(4/25)의 024 생산관리(7)의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포장기사	필기시험	1. 포장일반 2. 물류관리 및 유통시험 3. 포장재료 및 시험 4. 포장기법
	실기시험	포장 실무
포장산업기사	필기시험	1. 포장일반 2. 포장재료 및 시험 3. 포장기법
	실기시험	포장 실무

별표 8 중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의 082 디자인(11)의 시각 디자인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	1.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2.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 3. 시각디자인 제작
	실기시험	시각디자인 제작 실무

별표 8 중 10 영업·판매(1/4)의 101 영업·판매(4)의 텔레마케팅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시험	1. 고객관리 2. 시장환경조사 3. 마케팅관리 4.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실기시험	비대면매체 고객관리 실무

별표 8 중 14 건설(6/98)의 141 건축(29)의 건축설비산업기사란,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란, 실내건축기능사란, 건축목공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설비계획 2. 건축설비설계 3. 건축설비 관련법규
	실기시험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일반시공계획 2. 조적미장시공 3. 타일석공시공
	실기시험	건축일반시공 실무

실내건축기능사	필기시험	실내디자인, 실내환경, 실내건축재료, 건축일반
	실기시험	실내건축 작업

건축목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목공시공계획 2. 목공 구조물 시공 3. 목공 마감 시공
	실기시험	건축목공시공 실무

별표 8 중 14 건설(6/98)의 144 도시·교통(5)의 교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교통운영 2. 교통계획 3. 교통안전 4. 교통시설
	실기시험	교통운영 및 관리

별표 8 중 “16 기계(7/79)”를 “16 기계(7/80)”로 하고, 같은 표의 161 기계제작(14)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란, 정밀측정산업기사란 및 정밀측정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란, 건설기계정비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중 “164 조선(6)”을 “164 조선(7)”으로 하고, 같은 표의 164 조선(7)[종전의 164 조선(6)]의 조선기사란을 삭제하고 조선기술사란 다음에 조선선체기사란 및 조선의장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167 금형·공작기계(7)의 프레스금형설계기사란, 사출금형산업기사란 및 금형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도면 해독 및 측정 2. CAM 프로그래밍 3. 컴퓨터수치제어(CNC) 절삭가공
	실기시험	CNC 가공 실무

정밀측정산업기사	필기시험	1. 정밀측정 2. 도면해독 3. 정밀가공 4. 재료시험
	실기시험	정밀측정 실무

정밀측정기능사	필기시험	정밀측정, 도면해독, 기계가공
	실기시험	정밀측정 실무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필기시험	1. SMT 공학 2. 솔더링 공학 3. 공기압
	실기시험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필기시험	건설기계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실기시험	건설기계 기본정비 실무

조선선체기사	필기시험	1. 선박기본설계 2. 선형설계 및 계산 3. 선체구조 설계 4. 선체해석
	실기시험	선체설계 실무

조선의장기사	필기시험	1. 선박기본설계 2. 철의장 설계 3. 기장 및 선박배관설계 4. 선실 및 전장설계
	실기시험	선박의장 설계 실무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	1. 프레스금형설계 2. 프레스금형제작 3. 프레스금형측정 및 재료
	실기시험	프레스금형 실무

사출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사출금형설계 2. 사출금형제작 3. 사출금형측정 및 재료
	실기시험	사출금형 실무

금형기능사	필기시험	금형 설계 및 제작
	실기시험	금형제작 실무

별표 8 중 “17 재료(5/38)”을 “17 재료(5/39)”로 하고, 같은 표의 171 금속·재료(17)의 압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중 “174 용접(6)”을 “174 용접(7)”으로 하고, 같은 표의 174 용접(7)[종전의 174 용접(6)]의 용접기능사란 및 특수용접기능사란을 삭제하고 용접산업기사란 다음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란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압연기능사	필기시험	열간압연, 냉간압연, 금속제도, 금속재료
	실기시험	압연 실무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피복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피복아크용접 실무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실무

별표 8 중 18 화학(2/12)의 182 위험물(3)의 위험물기능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기능장	필기시험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위험물취급 실무

별표 8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유·의복(2/16)”으로 하고, 같은 표의 191 섬유(8)의 의류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중 “192 의복(9)”을 “192 의복(8)”으로 하고, 같은 표의 192 의복(8)[종전의 192 의복(9)]의 한복산업기사란을 삭제하고, 신발류제조기능사란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의류기사	필기시험	1. 패션소재 2. 패션상품생산기획 3. 의류패턴제작 4. 의류생산공정관리 5. 의류품질관리
	실기시험	의류 설계 및 제작 실무

신발류제조기능사	필기시험	신발류제조공정, 신발류디자인, 신발류 봉제, 신발류검사
	실기시험	신발류제작 작업

별표 8 중 21 정보통신(3/31)의 212 방송·무선(6)의 무선설비기사란, 무선설비산업기사란, 무선설비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213 통신(10) 전파전자통신기사란,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란, 전파전자통신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 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실무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 엔지니어링 4.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실무

무선설비기능사	필기시험	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무선통신일반,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작업

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시스템 운용 4. 해상통신 운용 5. 전파 관계 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3. 해상통신 운용 4. 전파관계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시험	무선통신일반, 해상통신 운용, 전파 관계 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별표 8 중 “22 식품가공(2/11)”을 “22 식품가공(2/13)”으로 하고, 같은 표 중 “222 제과·제빵(4)”을 “222 제과·제빵(6)”으로 하고, 같은 표의 222 제과·제빵(6)[중전의 222 제과·제빵(4)]의 제과기능장란 다음에 제과산업기사란, 제과기능사란 다음에 제빵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과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안전관리 2. 제과점관리 3. 제과류 제품제조
	실기시험	과자류 제조 실무

제빵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안전관리 2. 제과점관리 3. 빵류 제품제조
	실기시험	빵류 제조 실무

별표 8 중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9)의 232 목재·가구·공예(14)의 귀금속가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귀금속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귀금속 디자인 2. 귀금속 및 보석 재료 3. 귀금속 가공 4. 귀금속 구조
	실기시험	귀금속가공 실무

별표 8 중 24 농림어업(4/39)의 241 농업(14)의 종자산업기사란 및 시설원예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자산업기사	필기시험	1. 종자생산과 법규 2. 육종 3. 재배 4. 작물보호
	실기시험	종자생산 실무

시설원예기사	필기시험	1. 원예학개론 2. 시설원예학 3. 재배학원론 4. 작물생리학 5. 수경재배학
	실기시험	시설원예 실무

별표 8 중 “26 환경·에너지(2/37)”를 “26 환경·에너지(2/36)”로 하고, 같은 표 중 “261 환경(24)”을 “261 환경(23)”으로 하고, 같은 표의 261 환경(23)[종전의 261 환경(24)]의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262 에너지·기상(13)의 에너지관리산업기사란과 에너지관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열 및 연소설비 2. 열설비설치 3. 열설비운전 4. 열설비안전관리 및 검사기준
	실기시험	열설비취급 실무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시험	열설비 설치, 운전 및 관리
	실기시험	열설비취급 실무

별표 9 제1호 중 14 건설의 141 건축란, 142 토목란 및 143 조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44 도시·교통란 다음에 145 건설 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	--------	----------------	----------------------------	--

142 토목		토목, 건설재료 시험, 응용지질,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건설재료시험,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	--	-------------------------------------	--------------

143 조경		조경	조경	
--------	--	----	----	--

145 건설 배관	배관		배관	
-----------	----	--	----	--

별표 9 제1호 중 16 기계의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	--	------------	----	--

별표 9 제1호 중 17 재료의 171 금속·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1 금속·재료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금속재료	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금속재료시험, 제강, 제선, 압연
-----------	------------------	------	--------------	--------------------

별표 9 제1호 중 19 섬유·의복의 191 섬유란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 중 20 전기·전자의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기기	광학, 의공, 전자계산기, 임베디드, 로봇기구 개발	광학기기, 의공, 3D프린터개발, 전자계산기제어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	------	------------------------------	----------------------------	-------------

별표 9 제1호 중 22 식품가공의 221 식품란 다음에 222 제과·제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제과·제빵	제과			
-----------	----	--	--	--

별표 9 제1호 중 24 농림어업의 241 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1 농업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유기농업, 종자	유기농업, 종자
--------	--	----------------------	----------	----------

별표 9 제1호 중 25 안전관리의 251 안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1 안전관리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가스
----------	----	---	--	----

별표 9 제1호 중 26 환경·에너지의 261 환경란 및 262 에너지·기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262 에너지·기상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별표 14 중 육군의 종합군수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중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차량운용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물자취급장비운전병	지게차운전기능사	
	발칸수리	전자기기기능사	
	용접/기계공작병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차량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차량야전정비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건설장비야전정비 초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전자기기기능사	
	유도무기야전정비 초급	전자기기기능사	
	특수통신야전정비 초급	전자기기기능사	
	탄약관리 초급 · 탄약관리 중급	화약취급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광학감시장비야전정비 초급 · 광학감시장비야전정비 중급	광학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별표 14 중 해군 기술훈련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행정학교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능사	
	보수 초급 · 중급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한식조리	한식조리기능사	
	추기초급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해난구조대	잠수	잠수기능사	
6전단 609	항공기체/기관 초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관 중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초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중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별표 14 중 공군의 군수1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1학교	항공기기체정비 부사관 초급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제작 부사관 초급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정밀측정장비정비 초급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별표 15 중 시험감독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감독위원	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시험실당 1명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종목별 시험실당 2명 이상

별표 19 중 직무분야의 자격종목(269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종목(271종목)

별표 19 중 16.기계의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조선기술사·산업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

별표 19 중 17.재료의 174 용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

별표 20 제1호 중 14 건설의 142 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2 토목	토목, 잠수
--------	--------

별표 20 제1호 중 20 전기·전자의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기기
--------	-------------------

별표 20 제2호 중 17 재료의 174 용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신청기관
검토 종목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의 종목(등급 개편, 직무분야 변경 등)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필요성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 범위 및 난이도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시행 가능성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해당 여부	
국가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정업무 위탁 희망기관	
그 밖의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격 확인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사항	시험구분	
	종목	수험번호
	최종 응시 연월일	

위와 같이 제 회 필기(실기)시험 또는 외부평가(년 월 일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합격 확인서

시험구분			
성명		생년월일	
종목			
수험번호			

년 제 회 국가기술자격의 필기(실기)시험 또는 외부평가(년 월 일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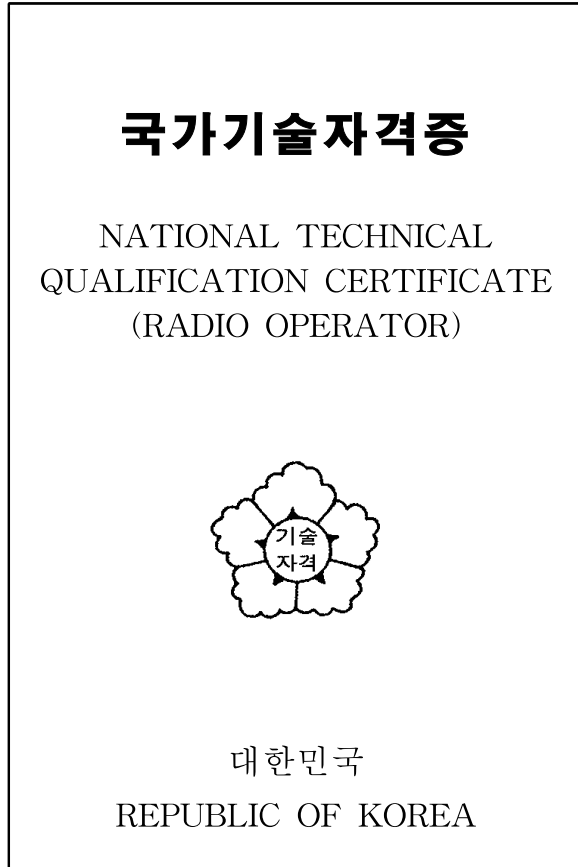
수탁기관의 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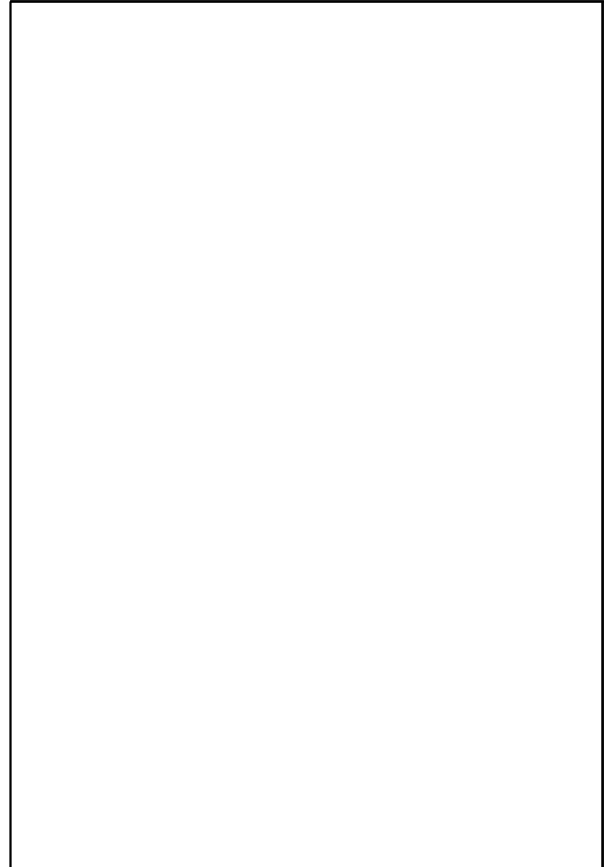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1.>

(표지 앞쪽)



(표지 뒤쪽)



비고 1. 검은색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76mm×115mm(고급비닐 200g/m²)

(1쪽)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2쪽)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주 무 부 처 (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수탁기관 장 직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3쪽)

CERTIFICATE NO. class : Name : Date of Birth : Date of Issu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Radio Operator of the class indicated above. It also verifies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in complem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Korea Communication Agency official Seal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4쪽)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5쪽)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 내용	확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6쪽)

비고(면허사항 등)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향로표지기사, 향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별표 2, 별표 8,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중 택일
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택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 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 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 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 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u>1천400시간</u>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 ----- ----- ----- ----- ----- ----- ----- ----- -- <u>1천200시간</u> ----- -----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다. ----- ----- ----- -----

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생략)

2. (생략)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
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
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
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
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 ④ (생

----- 1천2
00시간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

-----.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 ④ (현행)

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에서 정한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⑥ · ⑦ (생략)	과 같음) ⑤ ----- ----- ----- ----- -----. <u>다만, 별표 2의 동일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다른 등급의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	--